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· 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0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정동만 · 안태준
김태년 · 김문수 · 손명수
윤종균 · 박정현 · 이훈기
전용기 · 문진석 · 정준호
이정문 · 박상혁 · 김영환
정진욱 · 강준현 · 부승찬
김남근 · 김우영 · 허종식
박용갑 · 조인철 · 정일영
엄태영 · 안도걸 · 송재봉
강명구 의원(2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의 밀집화와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철, 지하상가, 고가도로 및 송전선로 등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.

최근 이러한 입체적 토지 이·활용을 안정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해 지하주차장,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음.(국토계획법 개정안, '26.5.7. 국회 본회의 통과)

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적제도는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을

등록하고 있어, 지상 및 지하 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등 입체적 권리관계와 시설물의 점유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이로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‘입체지적’ 체계로 재정비하고 ‘입체공간등록부’ 및 ‘입체지적측량’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지상·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”을 “지적확정측량, 지적재조사측량 및 입체지적측량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4. “입체지적측량”이란 토지의 지표, 지상 및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시설물의 현황과 권리공간의 위치, 경계,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.

제2조제19호 중 “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”을 “임야도, 경계점좌표등록부 및 입체공간등록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9호의4, 제25호의2 및 제2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의4. “입체공간등록부”란 토지의 지표, 지상 및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시설물의 현황과 권리관계 및 권리공간의 위치·경계,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기록한 지적공부를 말한다.

25의2. “입체경계점”이란 필지의 지표, 지상 및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권리공간의 경계 및 수직적 범위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입체공간등록부에 도해 또는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.

26의2. “입체경계”란 필지별로 입체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토지의 지상 및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권리공간의 수평 및 수직적 범위를 구획하는 선과 면을 말한다.

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시, 토지의 입체적 활용에 따른 권리공간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다.

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2(입체공간등록부의 등록 사항) 입체공간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

1. 토지의 소재
2. 지번
3. 지목
4. 경계 및 입체경계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비행위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입체공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지적측량”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, <u>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.</u>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지적확정측량, 지적재조사측량 및 입체지적측량을</u> ----- -----.
4의2·4의3 (생략)	4의2·4의3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4의4. “ <u>입체지적측량</u> ”이란 토지의 지표, 지상 및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시설물의 현황과 권리공간의 위치, 경계,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.
5. ~ 18. (생략)	5. ~ 18. (현행과 같음)
19. “지적공부”란 토지대장, 임야대장, 공유지연명부, 대지권등록부, 지적도, <u>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</u>	19. ----- ----- ----- <u>임야도, 경계점좌표등록부 및 입체공간</u>

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(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·저장된 것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19의2·19의3 (생략)

<신설>

20. ~ 25. (생략)

<신설>

26. (생략)

<신설>

등록부 등 -----

-----.

19의2·19의3 (현행과 같음)

19의4. “입체공간등록부”란 토지의 지표, 지상 및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시설물의 현황과 권리관계 및 권리공간의 위치·경계,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기록한 지적공부를 말한다.

20. ~ 25. (현행과 같음)

25의2. “입체경계점”이란 필지의 지표, 지상 및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권리공간의 경계 및 수직적 범위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입체공간등록부에 도해 또는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.

26. (현행과 같음)

26의2. “입체경계”란 필지별로 입체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토지의 지상 및 지하

27. ~ 34. (생략)
제64조(토지의 조사·등록 등)

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공간에 존재하는 권리공간의
수평 및 수직적 범위를 구획
하는 선과 면을 말한다.

27. ~ 34. (현행과 같음)
제64조(토지의 조사·등록 등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시, 토지
의 입체적 활용에 따른 권리공
간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등록
할 수 있다.

제73조의2(입체공간등록부의 등
록 사항) 입체공간등록부에는
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
야 한다.

1. 토지의 소재

2. 지번

3. 지목

4. 경계 및 입체경계
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하는 사항